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2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승원·이병훈

이상직 • 이상헌 • 안민석

이정문 • 민형배 • 유정주
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개발(R&D)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(R&D)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.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연구개발(R&D)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.

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'전문기관 운영 효율화'를 제시하였고 ('17.7.) 그 후속조치로 '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'('18.1., 경제관계장관회의)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 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/국민체육진흥공단/한국저작권위원회/한국문화관광연구원 4개 기관

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.

콘텐츠, 문화예술, 관광, 스포츠, 저작권 연구개발(R&D)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(R&D)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·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.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/한국저작권위원회/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(R&D)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마련하고,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(안제17조, 제17조의2 및 제31조).

법률 제 호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"을 "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"로, "기술개발사업"을 각각 "연구개발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술개발사업을"을 "연구개발사업을"로, "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"을 "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"으로, "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"을 "전문기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"을 "전문기관"으로 하면, 같은 조 제3항 중 "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"을 "전문기관이를 "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·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"로, "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"을 "연구개발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기술개발사업의"를 "연구개발사업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 2호 중 "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"를 "전문기관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 3호 중 "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"을 "연구개발기관"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"기술개발사업이"를 "연구개발사업이"로, "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"를 "연구개발기관에"로, "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"를 "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"로 한다.

제31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 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- 4.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·평가 및 성과 확산 등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7조(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제17조(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의 촉진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의 촉진) ① -----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----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 개발-----연구개발사업-----및 문화콘텐츠의 개발(이하 "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촉 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 ----연구개발사 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 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 ② -----연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개발사업을-----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·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 ----연구개발사업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 담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기술 를 대행하는 기관----전문 개발사업전담기관"이라 한다) 기관----을 지정할 수 있다.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 략)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

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 (이하 "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" 이라 한다)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-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
 수 있는 <u>기술개발사업의</u> 범위
- 2. 제2항에 따라 <u>기술개발사업</u><u>전담기관에</u>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
- 3. 제3항에 따른 <u>기술개발사업</u> 실시기관 선정의 방법·절차 제17조의2(기술료의 징수) ① 문 자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 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<u>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</u>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기술료"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1조(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) 7

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
<u>연구개발기관</u>
4
1
<u>연구개발사업의</u>
2전문기관에
3 <u>연구개발기관</u> -
제17조의2(기술료의 징수) ①
<u>연</u>
<u>구개발사업이</u>
연구개발기관에
연구개발사 <u></u>
업으로부터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(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)

- ① ~ ⑤ (생 략) <신 설>
-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 4.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 술개발기획,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
- 5. ~ 16. (생 략)
- <u>⑦</u> ~ <u>⑩</u> (생 략)

-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 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<u>수 있다.</u>
- 7 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발사업의 기획・관리・평가 및 성과확산 등
- 5. ~ 16. (현행과 같음)
- ⑧ ~ ⑪ (현행 제7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)